



퇴직(예정)공직자가 꼭 알아야 할

청탁금지법



국민권익위원회

Ⅰ 제 1장 Ⅰ

퇴직공직자에 대한 금품 등 제공



1장. 퇴직공직자에 대한 금품 등 제공

Q

퇴직을 한 직원에게 전 직장동료들이
각출하여 200만원 상당의
퇴직기념 선물을 증정하고자 하는데 가능한가요?

A

예. 가능합니다.



퇴직한 공직자등은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이 아니므로 가능합니다.

※ 퇴직한 공직자는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이 아니므로 100만원 초과 선물도 가능



국민권익위원회

1장. 퇴직공직자에 대한 금품 등 제공

Q

퇴직 후 국립대학교 교수로 임용된 직원에게 전 직장동료들이 100만원 상당의 퇴직기념 선물을 제공하고자 하는데 가능한가요?

A

직무 관련성이 없으면 가능하나, 직무관련성이 있는 경우 5만원 이내의 선물은 가능하나 금전은 안됩니다.



퇴직 후 재취업 등으로 법 적용대상인 공직자등에 해당하는 경우 퇴직자와 전 직장동료들 간 직무관련성이 없다면 1회 100만원 이하 (매 회계연도 300만원 이하)의 금품등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직무관련성이 있다면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 의례의 목적으로 5만원 이내의 선물이 허용될 수 있으나(법 제8조제3항제2호), 금전은 선물에 해당하지 않아 금지됩니다.

※ 직무의 개념과 당사자의 관계, 금품수수 시기 및 경위 등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직무관련성 판단



Ⅰ 제 2장 Ⅰ

퇴직예정 공직자에 대한 금품 등 제공



Q

동료직원들이 각출하여 퇴직하는 동료에게 70만원 상당의 행운의 열쇠를 선물하는 것이 청탁금지법상 가능한가요?

A

예. 가능합니다.



동료 직원들 사이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직무관련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퇴직하는 동료에게 100만원 이하의 행운의 열쇠를 선물하는 것은 허용됩니다.



Q

공로 연수 들어가는 동료에게 같이 근무했던
직원들이 기념패를 선물하는 것이
청탁금지법상 가능한가요?

A

예. 가능합니다.



기념패는 특별히 고가인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등
적정한 수준에서 제공되는 것이라면 **사회상규에 따른 금품**으로서
허용될 수 있습니다.

※ 기념패는 하급자가 상급자에게 제공하는 경우에도 특별히 고가에 해당하지 않는 등
적정한 수준에서 제공되는 것이라면 사회상규에 따른 금품등으로 허용



Q

직원들이 각출하여 퇴직예정 공직자
(공로연수 포함)에게 300만원 상당의
가방을 선물한 경우 청탁금지법상 가능한가요?

A

안됩니다.



공직자등은 직무관련 여부, 기부, 후원, 증여 등
명목에 관계 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 1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을 수 없습니다. 금품제공자들이 상호 합의 하에
공동으로 제공하는 경우 받는 사람 뿐만 아니라 제공한 사람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 형법 제30조(공동정범)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한 때에는 각자를 그 죄의 정범으로 처벌한다



Q 직원들이 각출하여 퇴직예정 공직자 (공로연수 포함)에게
100만원의 금전을 제공하고자 하는데
청탁금지법상 가능한가요?

A 5만원 이내의 선물은 가능하나, 금전은 안됩니다.



퇴직이 예정된 공직자와 소속 공직자들 사이에는
직무관련성이 없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 의례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5만원 이하의 선물은 허용될 수 있으나,
금전은 선물에 해당하지 않아 금지됩니다.

※ 직무관련성이 없다면 1회 100만원(매 회계연도 300만원) 이내 금품등 제공 가능

Q

직원상조회, 친목회 등에서 회칙에 따라 퇴직예정
공직자에게 현금 100만원을 주는 것이 가능한가요?

A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5호의
요건을 갖춘다면 가능합니다.



직원상조회, 친목회 등에서 회칙에 따라 퇴직예정 공직자에게
지급한 금전은 해당 상조회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구성원에게
제공하는 금품등으로서 허용될 수 있습니다. (법 제8조제3항제5호)



여기서 잠깐!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5호에 따라 갖춰야 할 요건

- 1 장기적인 고유한 목적을 가지고 구성원의 변경과 관계없이 존속할 것
- 2 내부적 의사결정기관과 대외적 집행기관인 대표자가 존재할 것
- 3 정관, 규약, 회칙 등과 같은 내부규정이나 기준이 존재할 것
- 4 단체가 정하는 기준에 따라 제공되는 경우라 하더라도 해당 제공 금품등이 구성원들 전체가 참여하는 회비 등으로 구성되어야 하고, 단체 구성원 일부의 후원으로만 이루어진 경우가 아닐 것

※ 또한, 제5호의 단체는 구성원과 별개로 독자적 존재로서의 조직을 갖추고 있어야 함

Q

친목모임에서 퇴직예정 공직자에게 회칙에 따라
퇴직기념 금 10돈 상당의
행운의 열쇠를 주는 것이 가능한가요?

A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5호의
요건을 갖춘다면 가능합니다.



사안의 친목회가 법 제8조제3항제5호의 단체에 해당하고,
친목회의 기준에 따라 제공하는 금품등이라면 허용됩니다.



Q

퇴직예정 공직자에게 친목모임에서
회비로 금전을 제공하고 있는데
회칙이 없는 경우에도 가능한가요?

A

안됩니다.



회칙이 없는 경우에는 법 제8조제3항제5호의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기 어려워 청탁금지법에 저촉될 수 있습니다.

당초 회칙이 없이 운영하다 추후 회칙을 정한 경우,
회칙을 정하기 전에 적용한 회비를 회칙에 따라
퇴직예정 공직자인 회원에게 제공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Q

(회칙에 제공 근거가 없는 경우) 친목모임 회원이 아닌
퇴직예정 공직자가 회비로 제공하는
금품등을 받을 수 있나요?

A

안됩니다.



법 제8조제3항제5호는 회원에게 회칙에서 정한 금품등을 제공하는 것을 허용하는 것이므로,
회원이 아닌 퇴직예정 공직자에게 회비로 금품등을 제공하는 것은 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퇴직예정 공직자와 직무관련성이 없다면 회비에서가 아닌

1회 100만원(매 회계연도 300만원) 이하의 금품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직무관련성이 있다면 원활한 직무수행, 사고, 의례의 목적으로 5만원 이하 선물은 허용될 수 있지만,
금전은 선물에 해당하지 않아 금지됩니다.



Q

(회칙에 제공 근거가 있는 경우) 친목모임 회칙에 회비로 회원이 아닌자의 퇴직시 전별금을 줄 수 있다는 규정이 있는 경우, 회원이 아닌 퇴직예정 공직자가 회비로 제공하는 금품등을 받을 수 있나요?

A

안됩니다.



법 제8조제3항제5호는 회원에게 회칙에서 정한 금품등을 제공하는 것을 허용하는 것이므로, 회원이 아닌 퇴직예정 공직자에게 회비로 금품등을 제공하는 것은 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퇴직예정 공직자와 직무관련성이 없다면 회비에서가 아닌 1회 100만원(매 회계연도 300만원) 이하의 금품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직무관련성이 있다면 원활한 직무수행, 사고, 의례의 목적으로 5만원 이하 선물은 허용될 수 있지만, 금전은 금지됩니다. 회칙이 없는 경우에는 법 제8조제3항제5호의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기 어려워 청탁금지법에 저촉될 수 있습니다.



Q

지역 OO 협의회 회원이 퇴임 또는 인사발령등으로 임지를 떠나는 경우 단체 내부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예산으로 조성된 회비에서 100만원 상당의 금품을 제공할 수 있나요?

Q

OO 교육협의회에서 해당 학교를 퇴임하는 회원에 대해 각 학교 예산으로 조성된 회비에서 금5~10돈(90~180만원)을 제공할 수 있나요?

A

안됩니다.



자세한 설명은 다음 페이지를 참고해주세요.

원칙적으로 친목회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구성원에게

제공하는 금품등은 법 제8조제3항제5호에 따른 요건을 갖춘다면 허용됩니다.

이 때 법 제8조제3항제5호는 구성원들 전체가 **개인 비용으로 참여한 회비 등으로** 구성되는 것을 의미하므로, 사안의 경우처럼 친목 도모를 목적으로 하는 모임에서 **회비를 개인 비용이 아닌 지방자치단체 또는 각 학교의 예산으로 조성한 것**이라면 법 제8조제3항제5호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등으로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수수한 금품등 가액에 따라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제재받을 수 있습니다.(1회 100만원 초과시 형벌, 100만원 이하 시 과태료 부과)

이 경우, 금품제공자들이 **상호 합의 하에 공동으로** 제공하는 경우로서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받은 사람 뿐만 아니라 제공한 사람도 모두 제재 대상이** 됩니다.

※ 「공무원 행동강령」의 예산의 목적외 사용 금지(제7조)위반에도 해당



라. 유관단체(산하기관)에서
직무관련자에게 제공

Q (금전) 퇴직예정 공직자에게 직무관련 유관단체에서
각 단체별로 20만원의 금전을 주는 것이 가능한가요?
※ 금품제공자들이 상호 합의 없이 각각 제공하는 경우임

A 5만원 이내의 선물은 가능하나, 금전은 안됩니다.



유관단체와 퇴직예정 공직자 사이에서 직무관련성이 없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 의례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5만원 이하의 선물이 허용될 수 있습니다.(법 제8조제3항제2호)
하지만, 금전은 선물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금지됩니다.



마. 수수 금지 금품등의 처리

Q

(대응절차) 공로연수에 들어가는 부서장에게 직원들이
각출하여 150만원 상당의 선물을 주었습니다.
어떻게 처리하면 되나요?

A

신고하고 반환하셔야 합니다.



공직자등은 수수 금지 금품등을 받을 경우
소속기관장에게 지체없이 서면(전자문서 포함)으로 신고하여야 하며,
해당 선물은 제공자에게 지체없이 반환하여야 합니다.
만약 공직자등이 지체없이 신고하지 않거나 반환, 인도하지 않은 경우에는 제재대상이 됩니다.



청탁금지법으로
더욱 깨끗하고 공정해지는
대한민국,
국민권익위원회가
함께 합니다.

